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수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850

발의연월일: 2021. 10. 15.

발 의 자: 김수흥·강선우·고용진

김교흥 · 김주영 · 서영석

안규백 · 양경숙 · 양정숙

윤준병 • 윤후덕 • 이해식

(129]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벤처기업 임원 등이 해당 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비과세, 납부특례 및 과세특례, 벤처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 소득세 과세이연 특례를 운영 중임.

그런데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혜택이 연간 3 천만원 이내로 제한되고 전략적 제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기업의 범 위가 제한되어 있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으며,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및 전략적 제휴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가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.

이에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혜택을 연간 5천 만원 이내로 확대하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, 벤처기업의 주식 매수선택권 및 전략적 제휴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, 동 개정안 공포일 이전에 스톡옵션을 이미 행사한 자회사임직원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및 부칙을 개정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및 납부특례의 적용 대상을 벤처기업의 임직원 외에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으로 확대하고, 비과세 금액을 연간 3천만원에서 연간 5천만원으로 확대하며, 비과세 및 납부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(안 제16조의2제1항 및 제16조의3제1항).
- 나.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을 벤처기업의 임직원 외에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으로 확대하고, 시가 이하로 발행하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며,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(안 제16조의4).
- 다.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을 벤처기업 및 매출액 연구·인력개발비 투자 비중이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 외에 기술우수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, 과세특례 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(안 제46조의7제 1항).
- 라. 이 법 시행 전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6조의3에

따라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이 법 시행 후 소득세를 신고하거나 결정, 또는 경정하는 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개정법률 시행 이전 부여분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함(안 부칙 제3조 신설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2제1항 중 "벤처기업의"를 "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"로,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, "3천만원"을 "5천만원"으로 한다.

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4 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벤처기업의"를 "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"로,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 실제 매수가액이 해당 주식매수 선택권 부여 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(이하 "시가 이하 발행이익"이라 한다)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「소득세 법」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다.

제16조의4제2항 중 "제1항에 따라"를 "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따라"로, "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(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)에 대해서는"을 "양도하는 경우에는"으로 하고, 같은

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제1항에 따라"를 "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"로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

양도소득금액 = A - B - (C - D)

A: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양도가액

B: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과 적격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시가 중 큰 금액

C: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

D: 시가 이하 발행이익에 대해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은 금액

제4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"을 "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우수 중소기업"으로,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6조의4 제1항(시가 이하 발행이익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), 제2항부터 제4 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) 제16 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

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16조의2제1항 및 제1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 다만, 이 법 시행 전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이 법 시행 후 소득세를 신고하거나 결정, 또는 경정하는 분에도 적용한다.

제4조(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46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6조의7제 1항에 따른 주식교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안 제16조의2(벤처기업 주식매수선 제16조의2(벤처기업 주식매수선 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) ① 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) ①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 (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 "벤처기업 임원 등"이라 한다) 수한 기업의-----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1 <u>년</u> 12월 31일-----년 12월 31일 이전에 「벤처기 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 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 매수선택권 및 「상법」 제340 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(코넥 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한다)을 행사(벤처 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함으로써 얻은 이익(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 의 차액을 말하며, 주식에는 신 주인수권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부터 제16조의4까지 "벤처기 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" 이라 한다) 중 연간 3천만원 이

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

② (생 략)

제16조의3(벤처기업 주식매수선 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) ① 벤 처기업 임원 등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(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 되는 금액은 제외한다)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 부할 수 있다. 다만, 주식매수선 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 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~ 3. (생 략)

②·③ (생 략)

제16조의4(벤처기업 주식매수선 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 례) ① <u>벤처기업의</u>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"벤처 기업 임직원"이라 한다)가 <u>2021</u> 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벤처 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

제16조의3(벤처기업 주식매수선
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) ①
2024년 12월
 31일
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제16조의4(벤처기업 주식매수선
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
례) ①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

업이 인수한 기업의-----

년 12월 31일-----

수선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(이 하 이 조에서 "적격주식매수선 택권"이라 한다)을 행사함으로 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 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 벤처기 업 임직원이 제2항을 적용받을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「소득세 법」 제20조 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

1. · 2. (생략)

②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 지 아니한 경우 적격주식매수선 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

<u>다만, 주식매수선택권의</u>
행사 당시 실제 매수가액이 해
당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
시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(이
하 "시가 이하 발행이익"이라
한다)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선택
권 행사시에 「소득세법」 제20
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
를 과세한다.
1. · 2. (현행과 같음)
②
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
따라

(해당 주식의 보유를 원인으로 해당 벤처기업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)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(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)에 대해서는 「소득세법」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적격주식매 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 수가액을 「소득세법」 제97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으 로 한다.

양도
<u>하는 경우에는</u>
③ 제2하에 따라 야도소드세르

<u>액으로 한다.</u> 양도소득금액 = A - B - (C - D)

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

과세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은

A: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양도가액

B: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과 적격주식 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시가 중 큰 금액

C: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

D: 시가 이하 발행이익에 대해 제

④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(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후 제5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벤처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업하지 아니한다.

⑤ ~ ⑧ (생 략)

제46조의7(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) ①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주권상장법인(코넥스상장기업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)을 제외한벤처기업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대비 연구·인력개발비투자 비중이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을 포함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벤처기업등"이라 한다)의

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은 금액

(4	<u>제</u>	1항	각	호	외	의	부	분	본	문
-	에	II	라								
-											
-				. — — :							
-											
-											
-											
-											
-											
(5	\sim	8	(ক্	년 행	과	같	음)			
제4	463	준 으	7(전리	‡적	제	휴.	를 :	위형	한	月
				山교	환등	들에	다	한	과	세	특
:	례)	1) -		. — — -						
-											
-				. — — .							
				- <u>5</u> 3							
	フ [©]	겁 .	노는	- 다	동	영리	경 <u>으</u>	_로	정	하	<u>는</u>
	. 7	2 ^	. >	중		1 - 1	1				

주주(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주 주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 다)가 소유하는 벤처기업등의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 추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주식회사인 법인(이하 이 조에 서 "제휴법인"이라 한다)이 보 유한 자기주식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(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 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주 식과 교환하거나 제휴법인에 현 물출자하고 그 제휴법인으로부 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주 식교환 또는 현물출자(이하 이 조에서 "주식교환등"이라 한다) 로 인하여 취득한 제휴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 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. 1. ~ 3. (생략) ②·③ (생 략)

<u>2024년 12월 31일</u>
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·③ (현행과 같음)